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47회 임시회(2021. 3. 5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 
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복지도시위원회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1-27
----------	-------

2021. 3. 5.  
전문위원 신준호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권영숙 의원 외 7 인
- 나. 제 안 일 : 2021. 2. 26.
- 다. 회 부 일 : 2021. 2. 26.

## 2. 제안이유

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태풍 등 자연재해시 주민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,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 및 지원 대상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라. 추진사업 및 지원과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6조, 안 제7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- 다. 기타

- 1) 입법예고 : 2021. 2. 26.~ 3. 2.(의견 없음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제정 배경

-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음.

### 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8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4조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
-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지와 사업의 구체적 지원 세부기준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산재한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제거할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
-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피해 요인이 되는 거목 및 고사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조기에 현장민원을 대처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아울러, 수목의 공공성 회복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됨.
- 향후 집행부는 개별조례에 따른 나무심기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및 중복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하겠음.

# [관 계 법 령]

##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민의 책무)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